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정지원 의원 외 1인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지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발 의 자 : 정지원·양진오 의원(2인)
찬 성 자 : 김근한·김민성·김원섭·소진혁
이명희·이정희·장미경 의원(7인)

1.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식품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고 간편식·메디푸드·기능성식품 등 식품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푸드테크 관련 제품 수요가 확대되어 푸드테크산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 라. 육성 및 지원 사업(안 제6조)
- 마.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발전위원회 설치(안 제7조~제11조)
- 바.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2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

2)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나. 부서검토: 농식품산업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이 결합된 첨단·혁신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과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4. 푸드테크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
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
2. 푸드테크 기업 공동이용 생산·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의 현장 실증 및 사업화

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5.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
6.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7.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8.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경상북도,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 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제8조(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3.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 2~7. (생략)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3의2.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농식품산업과

조 례 명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교육, 실태조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제정으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구미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소요예산: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문 제 점: 해당없음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등)제3항
 -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농식품산업과 푸드테크TF팀 석상영(☎480-5927)